

부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0가단3499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4.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신영경, 정유진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 E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예비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위 중개업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C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후 2017. 4. 18. 부산 부산진구 H건물 제14층 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자신 명의의 J은행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C과 원고는 2018. 3. 29.자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4. 18.부터 2020. 4.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K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6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고, 피고 C이 사용하던 피고 B의 J은행 금융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8. 4. 18. 이 사건 대출금 16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마.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2018. 4. 18.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364,636원, G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 금융계좌로 46,880,671원, L 명의 계좌로 106,119,329원이 각 이체되었고(합계 153,000,000원), 대출금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4,740,049원, 1,136,409원, 123,542원이 각 이체되었다(합계 6,000,000원).

또 같은 날 위 G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 금융계좌에서 원고 명의 금융계좌로 48,000,000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4, 7 내지 13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는 피고 C 소유이나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 B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이 사건 대출금 1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중 48,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B은 나머지 112,000,000원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지급받아 부당이득하였으며,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1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C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피고 C이 피고 B의 이 사건 계좌와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 피고 C이 사용하던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원고 또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 및 피고 C이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위 금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주식회사 K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 D, E과 나누어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C, D, E은 이 사건 대출금 중 112,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는 같은 금액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E, D,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 D, E이 나누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J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실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 C, 원고, L 등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L에게 지급한 돈이 사실은 피고 D 또는 E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결 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 E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경아

별지

청구원인

본 사건에서 원고 A가 빌린 대출금은 피고 B의 J계좌로 입금되었으며, 피고 B은 자신의 J통장을 추가적 공동소송인 피고 C에게 빌려주었을 뿐, 자신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에 하나 피고 B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원고의 패소 위험이 있습니다.

추가적 공동소송인 피고 E, D, C 등 3명은 본 사건의 소송피고자인 입니다. 추가적 공동소송인 피고 C은 옥중 개인사신을 통하여, B의 J통장으로 들어온 1억6천만원을 소비한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10%를 피고 E에게, 50%를 피고 D에게, 40%를 원고 A에게 주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 A는 30%인 4,800만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대출금 1억6천만원에서 원고 A가 소비한 4,800만원을 제외한 금112,000,000원은 피고 E, D, C 등 3명이 나눠서 소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E, D, C 등 3명을 이 사건의 예비적 공동소송인으로 추가 하고자,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